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58호
----------	--------

제출년월일 2025.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경관 심의와 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23조)
-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조정함(안 제24조)
- 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확대함(안 제29조)
- 라.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6. 25. ~ 7. 15.(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원안 가결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나) 경기도 :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조성사업(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로(폭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이상인”을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다만”을 “다만”으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

로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허가를 받기”를 “건축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관형성 및”을 “경관의”로 한다.

1.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를 “그”로 한다.

-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자문 시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인터넷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디자인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팀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팀장 장민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정은혜(☎520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u>법 제9조제11호</u>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 8. (생략)</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u>영 제5조제2항</u>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삭제</p> <p>2.·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u>법 제26조제1항제5호</u>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u>법 제9조제1항제11호</u>-----</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u>법 제11조제2항</u>에 따라</p> <p>-----</p> <p>-----.</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소하천정비법</u>」에 따른 소하천 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p> <p>4.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조성 사업(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p>

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 설>

제25조(경관협의를) 시 본청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시 출연기관의 장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업무가 경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25조(경관협의를) -----
----- 건
축허가 -----

----- 따른 -----
-----.

1.·2.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 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호로 이동 2017.3.2.>

2. 삭제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5명이내의 경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또는 자문대상의 종류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

1.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조 각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삭제>

4. ----- 경관의 -----

-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 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1. 제29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

<신 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자문 시 안전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인터넷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④ 그 -----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김포시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7.3.2>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3.2>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8. <삭제 2017.3.2>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하며 민간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3.2>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3.2>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3.2>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6.10.3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신설 2021.11.8.>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21.11.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1.11.8.>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1.7.2.)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3.2., 2021.7.2.>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3.2>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17.3.2>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3.2>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3.2>

제25조(경관협의) 시 본청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시 출연기관의 장은 건축허가를 받

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업무가 경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3.2>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하층은 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1.8.>

가. 삭제

나. 삭제

2. 공공건축물의 건축

3. <삭제 2017.3.2>

4. <삭제 2017.3.2>

5. <삭제 2017.3.2>

6. <삭제 2017.3.2>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2.9.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3.2>

2. <제6호로 이동 2017.3.2>

3. <삭제 2017.3.2>

4. <삭제 2017.3.2>

5. <제1호로 이동 2017.3.2>

6.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7.3.2>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호로 이동 2017.3.2>

2. <삭제 2017.3.2?>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17.3.2>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5명이내의 경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또는 자문대상의 종류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3.2]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 책으로 새로고침!"



김 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 의 일 : 2025. 8. 11.(월)
2. 심의내용 : 자치법규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심사
3. 심의안건 및 결과

심의번호	안 건 명 (규제사무 내용)	소관부서	심의결과
2025-03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안 제24조제1항, 제2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도시디자인과	원안동의 (부대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해심의 규정 생략 범위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 (안 제24조제2항제1호)
2025-04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 허가기준 	종합허가과	원안동의

끝.

정 책 기 획 과 장

수신자 예산법무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종합허가과장

주무관 **박이경** 70상상팀장 **조성태** 기획팀장 **이민호** 대령 2025. 8. 12. 정책기획과장 **전영**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과-7564

접수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무중로 1, (사무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792 팩스번호 031-980-2099 / ahwjddl9633@korea.kr / 비공개(5)

"책으로 물드는 도시, 김포!"

붙임 4

경기도내 타 시·군 비교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안 제23조)

구 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김포시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조성사업(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로(폭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고양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광명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공사 (유지관리공사는 제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사업 3.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신설·증설·개선 등 공사의 경우(단, 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6.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성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 20미터) 이상 개설 또는 총 사업비가 100

	<p>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군포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20미터 이상의 개설·확장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부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파주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4.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5.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 이상, H=3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4조제1항)

구 분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건축물																								
김포시 (개정안)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고양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9 524 523 577">유 형</th> <th data-bbox="523 524 746 577">구 분</th> <th data-bbox="746 524 1406 577">심의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577 523 831" rowspan="4">경관지구</td> <td data-bbox="523 577 746 631">정발산 일대</td> <td data-bbox="746 577 1406 63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631 746 685">장항습지 일대</td> <td data-bbox="746 631 1406 685">「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685 746 739">공릉천 일대</td> <td data-bbox="746 685 1406 739">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739 746 792">창릉천 일대</td> <td data-bbox="746 739 1406 792">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379 792 523 1077" rowspan="4">중점경관 관리구역</td> <td data-bbox="523 792 746 846">창릉천 주변지역</td> <td data-bbox="746 792 1406 846">창릉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846 746 900">to-city 일대</td> <td data-bbox="746 846 1406 900">킨텍스로, 한류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900 746 1025">중앙로, 화정 문화의 거리 일대</td> <td data-bbox="746 900 1406 1025">주거, 상업지역 내 7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colspan="2" data-bbox="523 1025 746 1077">※ 한강, 공릉천 주변지역 : 4층 이상 건축물 경관 자문 시행</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정발산 일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장항습지 일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릉천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	창릉천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창릉천 주변지역	창릉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	to-city 일대	킨텍스로, 한류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	중앙로, 화정 문화의 거리 일대	주거, 상업지역 내 7층 이상 건축물	※ 한강, 공릉천 주변지역 : 4층 이상 건축물 경관 자문 시행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정발산 일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장항습지 일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릉천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																							
	창릉천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의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창릉천 주변지역	창릉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																							
	to-city 일대	킨텍스로, 한류천과 인접한 7층 이상 건축물																							
	중앙로, 화정 문화의 거리 일대	주거, 상업지역 내 7층 이상 건축물																							
	※ 한강, 공릉천 주변지역 : 4층 이상 건축물 경관 자문 시행																								
광주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9 1084 523 1137">유 형</th> <th data-bbox="523 1084 746 1137">구 분</th> <th data-bbox="746 1084 1406 1137">심의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1137 523 1191">경관지구</td> <td data-bbox="523 1137 746 1191">전통경관지구</td> <td data-bbox="746 1137 1406 1191">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379 1191 523 1592" rowspan="3">중점경관 관리구역</td> <td data-bbox="523 1191 746 1339">수변경관구역</td> <td data-bbox="746 1191 1406 1339">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td> </tr> <tr> <td data-bbox="523 1339 746 1487">시가지경관구역</td> <td data-bbox="746 1339 1406 1487">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td> </tr> <tr> <td data-bbox="523 1487 746 1592">가로경관구역</td> <td data-bbox="746 1487 1406 1592">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td> </tr> </tbody> </table>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수변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지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가로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수변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지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가로경관구역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2층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리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9 1599 523 1653">유 형</th> <th data-bbox="523 1599 746 1653">구 분</th> <th data-bbox="746 1599 1406 1653">심의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1653 523 1800" rowspan="2">경관지구</td> <td data-bbox="523 1653 746 1738">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td> <td data-bbox="746 1653 1406 1738">2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1738 746 1800">시가지경관지구</td> <td data-bbox="746 1738 1406 1800">5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379 1800 523 2047" rowspan="3">중점경관 관리구역</td> <td data-bbox="523 1800 746 1886">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td> <td data-bbox="746 1800 1406 1886">3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1886 746 1971">시가지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td> <td data-bbox="746 1886 1406 1971">5층 이상 건축물</td> </tr> <tr> <td data-bbox="523 1971 746 2047">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td> <td data-bbox="746 1971 1406 2047">3층 이상 건축물</td> </tr> </tbody> </table>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안산시	유형	구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대부도 경관지구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대부도 연안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대부항금로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시화호 연안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문화 마을		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	
용인시	유형	구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자연경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특화경관 (수변, 역사문화)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시가지경관	7층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광고산 주변지역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한국민속촌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김량장동 일대	7층 이상인 건축물
		전대리 일대	5층 이상인 건축물
		이동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용담저수지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기흥호수공원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화성시	유형	구분	심의대상
	경관지구	경관지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용건릉 일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곡항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궁평유원지 일대		3층 이상 건축물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4조제2항)

구 분	변경심의 생략 대상 건축물
김포시 (개정안)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u>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u> 2. 건축물의 <u>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u>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u>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u>
고양시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2.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증축 행위
구리시	1.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남양주시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부천시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30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용인시	1.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모두 기존 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3.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의왕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화성시	1.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